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6421

제출연월일: 2024. 12. 12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통합허가대행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통합허가대행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11조의6).

법률 제 호
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의6 전단 중 "휴업하려는"을 "30일 이상 휴업하려는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의6(업무의 폐업ㆍ휴업) 통	제11조의6(업무의 폐업·휴업)
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	
업을 폐업하거나 <u>휴업하려는</u> 경	<u>30</u> 일 이상 휴
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	<u>업하려는</u>
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	
여야 한다. 이 경우 휴업의 기간	l
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	
다.	